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9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 권성동·박덕흠·임종득

박상웅 · 김성원 · 김용태

김승수 · 엄태영 · 송석준

이철규 의원(10인)

제안이유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부정을 근절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표준감사시간제,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이후 회계품질 및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아직 논쟁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감사 및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는 상장시 내부회계관

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 발생하여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바, 상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초기 3년간 감사의무를 유예하려는 것임.

두 번째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기업은 지배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 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 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은 폐지하되, 경미한 위반 사유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나치게 높은 감사인 지정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함. 또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게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 나.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 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11조제1항제11호).
- 다. 직권지정 사유의 위반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은 지

정 조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설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신규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지배회사의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에 대해서만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회사"를 "회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인정한 회사"를 "인정한 회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회사" 를 "회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교체가 3회 이상"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8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을 도과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 3.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 인 선임 시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회사
- 4.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제출한 회사
- 6.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도과하여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14조를 위반하여 전기감사인 의견진술 또는 보고절차를 위반한 회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일원화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자산총액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2 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로 한다.

-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3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대표이사의 교체로 인한 사유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감사인을 지정한 사업연도 중 이 법 시행일 후 시작되는 잔여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가 실효된다.
-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6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	
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	
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	
장법인은 <u>제외한다)</u> 의 감사인은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	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
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	만인 신규 주권상장법인은 상장
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	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다.	제외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	⑦
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u>다만, 주권상장법인인 지배</u>
	회사의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

⑧ (생략)

-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 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단서 신설>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 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단서 신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
에 대해서만 종합의견을 감사보
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세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
사인 지정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회사. 다만, 증
 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
 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
 외한다.
3
인정한 회사. 다
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u></u>

4. • 5. (생략)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 사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
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
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사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 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u>7</u>. · <u>8</u>. (생 략)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단서 신설>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4.·5. (현행과 같음) <삭 제>

<u>6</u> .	· <u>7</u> . (현행	제7호	및	제8호	와
7	같음)					
8.						
_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 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 10. (생략)
-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 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 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 한 주권상장법인

12. (생략)

② ~ ⑦ (생 략)

<신 설>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4. (생 략)

③ (생략)

- 9. (현행 제10호와 같음)
- <u>10</u>. -----
- -- <u>이상</u> -----

-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 ② ~ (7) (현행과 같음)
-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_____
- -----.
- 1.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 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 반한 경우에는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 2. ~ <u>5</u>. (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생략) <신 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④ -----
 - 1.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 8항에 따른 기간을 도과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 사인을 선임한 회사
 - 3.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위 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가 감사인 선임 시 준수사항 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회사
 - 4.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감 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 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증 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아 <u>니하거나 거짓 또는 표시하여</u> 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하여 제출한 회사
 - 5. (현행 제1호와 같음)
 - 6.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도과하여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u><신 설></u>	7. 제14조를 위반하여 전기감사
	인 의견진술 또는 보고절차를
	위반한 회사
<u>2</u> . (생 략)	<u>8</u> . (현행 제2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